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-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

◇ 제 · 개정 이유

- ‘철도투자 규제 개선방안(‘23.4.24)’ 발표에 따라 민간의 제안부담을 줄이고,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주기적인 신규사업 선정절차 도입이 필요함
- 사업의향서 제출, 평가절차, 주요내용, 최초제안서 제출 기준 등을 규정하여 민간에서 보다 용이하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함

◇ 주요내용

가. 민간투자사업 제안 방식의 추가 및 보완(안 제5조)

혼합형 민간투자사업을 신설하고,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소유권 및 시설 관리운영권에 대한 설명 보완

나. 사업의향서를 제출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(안 제6조~제9조)

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제안을 위해 제출하는 사업의향서의 주요 내용, 접수 및 최초제안서 작성 대상 사업의 통보, 평가기준을 신설함

다. 민간사업 검토위원회를 통한 사업의향서 평가(안 제10조)

현행 민간제안사업 검토위원회에서 심의·자문하도록 하는 민간제안사업 처리방향에 더하여 사업의향서 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위원회의 구성 현행화 및 평가서식 개선

라. 사업의향서 평가에 따른 최초제안서 제출(안 제11조~제12조)

최초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하고, 최초제안서를 작성 제출한
경우 제안서 내용의 검토, 미제출 등에 대한 처리 절차를 정함